

# 2020년 경제분야 달라지는 지원제도

## 1 산업·경제분야(기준)

### ■ 일자리우수기업인증

※ 근거(시행일) :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('12. 11. 6.)

- 소관부서 : 경제실(일자리경제정책과)

종 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※ 기업지원금 : 3천만원(업체당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지원금 상향(3천만원 → 4천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상향

※ 근거(시행일) :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'19.11.29)

-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종 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재부품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30%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40% 이내</li> </ul>

### 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국민 경제기여도 추가

※ 근거(시행일) :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('19. 12. 10.)

-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종 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투지분 30%이상</li> <li>- 외투금액 1억원이상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자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좌동</li> <li>- 좌동</li> <li>- (추가)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 입주 시 선정 심의 강화

※ 근거(시행일) :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('19. 12. 10.)

- 소관부서 : 경제실(투자진흥과)

종 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리기관(시·도지사)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검토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여부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결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좌동</li> <li>- (추가) 입주희망기업이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기준(예: 제조업 3천만불 등)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4만m<sup>2</sup>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여부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
# II 2020년 경제분야 달라지는 지원제도

## 2 산업·경제분야(신규)

### ■ 전통시장·상점가 화재파기지보험 지원사업(시범)

- ※ 근거(시행일) :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('19. 7. 16.)  
 • 소관부서 : 경제실(소상공인과)

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
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: 전통시장법 제2조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 * 노점 및 5일장 제외</li> <li>• 지원내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험 가입 지원(도 30%, 시군 30%, 자부담 40%)</li> <li>- 화재 시 재물손해, 배상책임, 영업중단액, 풍수해 등 보상</li> </ul> </li> </ul>

## 3 보증 및 융자지원

### ■ 기본 금리인하

- ※ 근거(시행일) :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조치 반영('20. 1. 2.)  
 • 소관부서 : 경제실(특화기업지원과)

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
3.0%	2.85%